

1. 사업개요

□ 사업목적

- 국내 및 해외 거점기관을 활용하여 권역별·국가전략기술 분야별* 연구개발특구 소재 기업의 기술·제품 현지실증(POC, Proof of Concept)을 통한 글로벌 진출 촉진과 성과(수출, 투자 등) 창출 극대화
 - * 북미 동부(첨단바이오, 항공·우주 등) / 서부(AI, ICT 등) / 유럽(바이오헬스, 탄소중립 등)

□ 사업내용

- 출연연·과기특성화대학 發 창업기업, 연구소기업, 첨단기술기업 등 연구개발특구 소재 유망기업을 발굴하여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한 국내 사전 역량강화 프로그램 기획·운영
 - 국가전략기술 기반 특구기업 60개사(연간) 이상 발굴하여 보유 기술·제품의 글로벌 경쟁력, 진출 준비도 등 글로벌 역량을 진단하고, 공동 교육 및 기업별 맞춤 멘토링 등 지원
- 특구기업이 보유한 기술·제품 특성을 반영하여 진출 적합시장 도출 및 권역별 협력 거점 기관과 연계하여 해외 실증을 위한 사전 컨설팅 실시
 - 권역별 글로벌 PoC 운영기관(북미 동부/서부/유럽)과 연계하여 1차 선정기업(60개사)의 기술성, 시장성, 해외진출 적합도 등을 평가하여 상위 30개사(연간)를 선별·현지화 전략 지원
- 해외 사업화 지원기관과 공동으로 특구기업의 글로벌 진출 역량강화를 위한 단기 프로그램 기획·운영(특구재단과 사전 협의)
 - 현지 액셀러레이터 및 벤처캐피탈 등 해외 협력기관·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해외 투자 유치, 바이어 발굴·매칭, 비즈니스 파트너링 데이 등을 통해 글로벌 실전 역량 강화

< 협력거점 기반 글로벌 PoC 사업 추진내용(안) >

① 유망기업 발굴	② 글로벌 진출 역량 강화	③ 글로벌 현지 스케일업
국내 프로그램		해외 현지 프로그램(북미 동부/서부/유럽)
글로벌 진출 수요 선별	사전 역량강화	현지화 지원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특구 유망기업 발굴 및 선별(60개사/년) * 美동부/서부/유럽 각 20개사 • 글로벌 진출 역량 진단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글로벌 역량강화 공통 교육 운영 • 맞춤 컨설팅 통해 진출시장 도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권역별 거점기관과 우수기업 선정(30개사/년) * 美동부(10), 서부(10), 유럽(10) • 현지기관 연계 네트워킹 및 행사 등 참여

④ 글로벌 기술사업화 성과 창출 : 수출증대, 해외투자 연계, 현지법인 설립 등

해외 전시회 및 글로벌 데모데이 참여 지원, 글로벌 기술사업화 공동연구 등 연계

※ 협력거점 기반 글로벌 PoC(공통) 유형은 위 추진내용 중 ①~② 과정에 집중하여 프로그램 기획·운영

2. 지원내용

□ 당해연도 예산 : 1,000백만원 이내(1개 과제)

* '25년도의 경우 1,000백만원(9/12개월)을 지원하고, '26년도에는 1,300백만원(12/12개월) 지원 예정
(단, '25년도 예산만 확정이며, 향후 예산 확보 상황 등에 따라 지원규모 및 기간 변경될 수 있음)

□ 총 사업기간 : 협약일로부터 21개월 이내

□ 지원대상

- 주관연구개발기관 : 글로벌 PoC 등 해외진출 지원 프로그램의 운영 경험이 있고, 연구개발특구 내 글로벌 진출 딥테크 유망기업 발굴을 위한 역량 및 네트워크를 보유한 국내 민간 영리법인(단독 또는 총 3개 기관 이내 컨소시엄 구성 가능)
- 공동연구개발기관(해당 시) : 글로벌 진출 지원 프로그램 운영 경험이 있고 북미, 유럽 등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보유한 국내 또는 해외 민간 영리법인

□ 지원내용

- 유망기업 발굴·선정, 기업·시장 분석, 글로벌 역량강화 교육 기획·운영, 전문가 멘토링, PoC 전략 컨설팅, 현지 기관 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제반비용 지원
 - * 현지 협력거점 기관(북미 동부/서부/유럽)과 연계하여 선정된 기업(연간 30개사)의 실비 지원 포함

□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비율 : 전액(100%)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

□ 세부내용 및 성과목표

- 필수 성과지표를 반드시 포함하고, 글로벌 기술사업화 관련 자율 성과지표 구성·제안

구분	성과지표	목표치
필수목표	• 글로벌 PoC 유망기업 발굴 및 선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국가전략기술 분야 특구기업 Pool 구축, 모집홍보, 접수, 선발 등 추진 프로세스 및 세부계획 제시	120개사 이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1차년도 : 60개사- 2차년도 : 60개사
	• 글로벌 진출 역량진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1차 선정기업의 기술·제품의 우수성, 시장성, 글로벌 경쟁력, 커뮤니케이션 역량 등 글로벌 진출 역량 종합 진단	120개사 이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1차년도 : 60개사- 2차년도 : 60개사
	• 국내 사전 역량강화 프로그램 기획·운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1차 역량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진출 공통 교육, 기업별 맞춤 멘토링 등 역량강화 프로그램 세부계획 제시	자율제안
	• 글로벌 PoC 전략 컨설팅 및 현지 협력거점 기관 연계·매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권역별 PoC 거점기관(북미 동부/서부/유럽)과 연계하여 선발한 2차 선정 기업 대상 PoC 전략 컨설팅 방안, 진출시장 도출 등 세부내용 제시	60개사 이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1차년도 : 30개사- 2차년도 : 30개사
	• 해외 협력기관 연계 현지 프로그램 기획·운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협력대상 국가 및 기관 추후 특구재단과 사전협의하여 추진	2회 이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연차별 각 1회
자율목표	• 필수목표 외 글로벌 기술사업화 우수성을 나타내는 자율목표 제안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(예시1) 해외 투자유치, 수출 증대, 현지법인 설립, 국제공동연구 연계 등- (예시2) 바이어 연계, 수출계약 지원 등 선정기업에 대한 후속성장 지원 지표	-

※ 성과목표는 평가위원회의 평가내용을 반영하여 협약체결 전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

□ 중소·중견기업 소속의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

- 중소·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
 -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
 - 중소·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,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
-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
- 지식서비스분야, S/W 또는 설계기술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
 - ※ 첨부 참고자료(영리기관의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)에 따르되, 해당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건비 현금산정 불가

□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례 신규 인력 채용

-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총 연구개발기간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액을 기준으로 매 5억원 당 1명 이상의 비율로 청년(만 18세~34세)을 참여연구원으로 신규 채용해야 함
 - ※ 신규채용 연구원(청년인력)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(2024년 7월 17일 ~)부터 과제 종료 시 까지 채용한 인력이며 채용 시점에 청년기준에 부합해야 함
 - ※ 군 복무 시 복무 기간만큼 추가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인정이 가능하며 군 복무기간은 연월수로 산정하되, 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 1월로 계산함
- 대상기업은 1차년도에 최소 1명을 채용하고, 지급받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매 5억원이 되는 해당 연도마다 청년 연구인력을 채용하며 1년 이상 고용상태를 반드시 유지해야 함
- 해당 인력을 채용 후 1년 이상 유지하지 못하고 해고하거나 채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인건비 전액을 불인정(기 지급한 금액 포함하되, 해당 인력의 자발적 퇴사의 경우 2개월 이내에 대체인력을 채용하거나, 채용노력을 지속한 경우 해당 인력에게 기 지급한 금액은 예외로 함)

< 예시 >

-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.25억원의 R&D 과제를 총 2년 동안 수행하는 기업에 대한 적용
 - 총수행기간 2년 동안 지급받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5.25억원이므로 총 1명 이상 채용해야 함
 - 채용 시점은 지급받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매 5억원이 되는 시점(V표시)이나 첫 5억원을 지급받는 시점과는 별개로 1차년도에 최소 1명을 우선 채용해야 함

사업연도	1차년도			2차년도		
해당연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	2.25억			3.0억		
매 5억원 이상인 시점				V		
채용 사례	1명					

□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: 해당없음

- 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 : 본 사업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른 '동시수행과제수 제한' 과제에 해당함
 -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본 공고에서 지원하는 과제를 포함하여 최대 5개로,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함
 - ※ 단 관련법령 및 규정 등에 따라 동시수행과제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과제는 동시수행과제 수 제한 대상에 포함하지 않음

- 과제 신청기관은 본 공고 지원과제 신청 시 동시수행과제수 제한을 위배한 상황에서 신청할 수 없으며, 향후 과제선정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수행과제수 제한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, 즉시 그 사실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통지하여 연구책임자 변경 등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함
- 과제 신청기관이 동시수행과제수를 초과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, 사후 적발될 경우, 사안에 따라 관련법령 및 규정에 근거한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음

< 관련법령 및 규정 >

- 국가연구개발혁신법 : 제31조(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), 제32조(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), 제35조(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), 시행령 제64조(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)
-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(과기정통부 고시)
- '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제외 과제(안)(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55회 운영위원회 심의, 2023.12.7.)

□ 연구개발성과의 소유(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)

-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것이 원칙임
-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으며, 세부 기준은 다음을 따름
 -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: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소유
 -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: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되,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실시(연구개발성과를 사용 · 양도 · 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)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름
 -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: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
 - 외국에 소재한 기관 · 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: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에게 우선 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
- 아래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
 -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 -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
 -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

□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: 연구장비 계상 불가

3.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

사업 추진체계



추진절차



* 상기 일정과 방법 등은 운영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평가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음

4. 평가기준 및 유의사항

평가기준

평가항목	세부항목	비중(%)
수행 역량	• 연구개발특구 글로벌 기술사업화 및 PoC 지원 사업에 대한 이해도	10
	• 연구책임자 및 신청기관의 글로벌 진출 지원 역량 및 전문성	10
	• 인력 운영계획의 적절성 및 전담 인력의 전문성	10
추진계획의 타당성	• 사업 수행 목표의 도전성 및 혁신성	10
	• 글로벌 유망기업 발굴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	20
	• 국내 프로그램 운영 및 해외 협력기관 연계 계획의 적절성	20
기대효과	• 글로벌 우수성과(수출, 해외투자, 해외법인 등) 도출 실현 가능성	10
	• 글로벌 진출 지원기업에 대한 후속성장 지원 계획의 적절성	10
계		100

* 세부평가 항목 기준은 평가/심의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

평가방법

-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검토 및 발표평가, 발표평가, 현장방문평가, 토론평가,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
- 발표평가 시 사업계획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
-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'지원가능과제',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'지원제외'로 분류함

- '지원 가능 과제'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 -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, 예산 범위 내에서 '지원가능과제'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
 -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,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·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
- * 관련 규정 :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(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) 제3항 및 제15조 (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)
- 과제신청 접수결과 경쟁률(선정예정기관 수 대비 신청기관 수)이 1:1 이하의 단독·미응모의 경우, 사업에 대해 2주 공고 연장 실시
 - 연장 공고 후에도 경쟁률이 1:1일 경우는 지원가능 평가점수 기준을 60점 이상에서 75점 이상으로 상향하여 절대평가로 추진하며, 미응모의 경우는 재기획 후 공고 추진

선정평가 시 우대사항 : 해당 없음

선정평가 시 감점사항 : 최종점수 산출 시 감점기준에 따라 총점에서 차감

- 최근 3년 이내(접수마감일 기준) 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해약 및 제재처분 된 연구책임자나 기관(주관연구개발기관, 공동연구개발기관, 위탁연구개발기관 등)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(1점)
- 최근 3년 이내(접수마감일 기준)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또는 연구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관(주관연구개발기관, 공동연구개발기관, 위탁연구개발기관 등)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(1점)

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: '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'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

부실위험 확인 관련 제출증빙 서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'21년도~'23년도 결산 표준재무제표(국세청(홈택스)발급)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* 접수마감일 기준 '24년도 결산 미완료에 따라 신고된 전전년도('23년도)까지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

* 단,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(K-IFRS)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·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하거나,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(K-GAAP)을 적용하여 부채비율, 유동비율,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. 이 경우,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등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해야 하며,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

* 선정평가 이후 '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'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,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

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

근거법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가연구개발혁신법,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*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,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,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,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○ 과학기술기본법,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, 시행규칙 ○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,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○ 국가연구개발 시설·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
관련규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○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

5. 신청방법 및 절차

사업공고

- 과학기술정보통신부(www.msit.go.kr)
-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(<https://www.ntis.go.kr>)
- 연구개발특구포털(www.innopolis.or.kr)

신청방법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www.iris.go.kr)을 통한 온라인 접수

접수기간 : '25. 2. 4.(화) ~ '25. 2. 28(금), 15:00까지(IRIS 시스템 시간 기준)

제출서류 : 제출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(PDF) 형태로 시스템 업로드

번호	서류명	서식	제출대상		파일형식
			주관	공동	
1 (필수)	연구개발계획서	서식 1호	○	-	압축파일 (한글 PDF 각1부)
2 (필수)	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	서식 2호	○	○	PDF
3 (필수)	사업자등록증 ※ 해외 소재 기관의 경우 해당국가 라이센스 제출	-	○	○	PDF
4 (필수)	법인등기부등본 ※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※ 국내 신청기관(주관/공동) 필수제출	-	○	해당시	PDF
5 (필수)	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	서식 3호	○	○	PDF
6 (필수)	NTIS 차별성 검토 검색결과증 ※ 차별성 점수 40점 기준	-	○	-	PDF
7 (필수)	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	서식 4호	○	○	PDF
8 (필수)	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동의서	서식 5호	○	○	PDF
9 (필수)	연구윤리·청렴 및 보안서약서	서식 6호	○	○	PDF
10 (필수)	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※ 표준재무제표는 최근 3개년도('21~'23) 기준 국세청 흠텍스 발급분	-	○	○	PDF
11 (필수)	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※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※ 국내 신청기관(주관/공동) 필수제출	-	○	해당시	PDF

번호	서류명	서식	제출대상		파일형식
			주관	공동	
12	사업수행실적 증빙서류(실적증명서 등) ※ 최근 3개년, 최대 5개 이내	서식 7호	해당시	해당시	PDF
13 (필수)	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과제 수 준수 확인서	서식 8호	O	-	PDF
14	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신청서	서식 9호	해당시	-	PDF
15 (필수)	참여연구원 정보	서식 10호	O	O	엑셀(Excel)

신청 시 주의사항

-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
- 신청자의 실수로 전산접수 마감시간 이전 접속 후, 마감시간 경과로 제출완료하지 못한 경우 미제출로 사전제외 함
- 전산 등록 시,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
-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시스템에 등록 제출
※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
-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, 필수서류가 제출형식에 맞지 않거나 날인이 누락되어 서류가 미비한 경우 해당 과제는 사전지원제외 처리될 수 있음
- 모든 제출서류는 Windows 운영 체제를 사용하여 확인하며 해당 운영 체제를 통해 확인 가능하도록 시스템 업로드 권장

문의처(담당부서) :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사업총괄본부 글로벌기술혁신팀

○ 담당자 : 김희정 선임연구원(hjkim@innopolis.or.kr/042-865-8932)

6. 기타사항

-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
-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-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
-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·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, 지침·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업 및 수행기관에게 있음
-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, 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·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,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
- 사업선정 시 정량지표 및 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협의 하여 조정될 수 있음